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453호

2. 발 의 자 : 김경자(양천) 의원 외 15명

3. 발의일자 : 2018. 3. 21.

4. 회부일자 : 2018. 3. 27.

Ⅱ.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의 대부·매각·교환·양여 등의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교환과 양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무를 재산유형에 따른 구분 없이 교육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과 상충되고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위임사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바,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범위와 그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여 교육지원청과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행정재산의 처분에 관한 위임사무는 교환 및 양여만 가능하도록 함 (안 제5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Ⅴ.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1일 김경자(양천)의원 등 16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453호로 발의되어 2018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위임사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지원청과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장에게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 조례 제5조의 내용 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률에 맞게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동 조례 제5조제26호가목에 따르면 해당 교육장 소관 행정재산, 일반재산 및 제27호의 각급학교 행정재산(다만, 매입취득, 처분은 대장가격 5억원 이하만 해당)의 경우 교육장이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은 대장가격 5억원 이하의 공유재산에 관한 처분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의 경우 교환과 양여로 처분의 범위를 한정한 것입니다.

○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1]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

1)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처분[2]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처분 중 양여와 교환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까지 일괄하여 취득과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자칫 처분의 경우 상위법률의 규정을 넘어선 모든 처분의 경우에도 권한의 위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 조례안이 공유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엄격히 구분하여 위임의 범위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한 반면 종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3]

□ 이상으로「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도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음(행정관리담당관-2835)

관 계 법 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